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36호 2022. 10. 17.(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0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67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및 폐지내역)12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자 선정원칙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불필요한 용어 삭제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개선

3. 주요내용

- 기존 규정 자구 수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 수정(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기존 규정 인용조항 수정(안 제19조, 제31조)
- 시설 관리 또는 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14, FAX : 032-749-7289
- E- mail : gy5945@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제10조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를 “구청장은 위원이”로, “경우에는 구청장이”를 “경우 해당 위

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스스로”를 “위원 스스로”로 한다.

제11조 제목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의 회의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위촉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질병으로 인하여”를 “질병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30조 중 “모니터”를 “관광모니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 또는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관광시설 또는 업무는 제2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u>외국인 관광객</u> ”이란 <u>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u> 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1. “ <u>관광객</u> ”이란 <u>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u> ----- -----.
2. ~ 3.(생략)	2. ~ 3.(현행과 같음)
4. “ <u>관광사업자 단체</u> ”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u>2이상</u> 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 ----- <u>단체</u> ”란 ----- ----- <u>둘 이상</u> ----- ----- -----.
5. “ <u>문화관광해설사</u> ”란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u>자</u> 를 말한다.	5. ----- ----- ----- ----- ----- <u>사람을</u>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략)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생략)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 3. (생략)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소관 국장과 구의회 의원 2명

<신설>

2.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현행과 같음)

1. ----- 관광객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한 차례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 4. (생략)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
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
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
한다.

1. ~ 5. (생략)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법 및 문화체육

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

- 경우 해당 위원을 -----

1. 위원 스스로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위원회의 사무-----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제17조(지급 제외) -----

-----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광진흥법」---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
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기준에 따
른다.

제19조(임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
촉된 문화관광광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광해설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
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4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는 성
별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하
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
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 「문화관광광해
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
--.

제19조(임무) ① 제18조에 따른 --
----- 다음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
----- 제19조제1
항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① -----

----- 사람을 -----
-----.
-----,

-----.

② -----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28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4. (생략)

제30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른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

-----, -----
-----, -----
----- 사람으로 --.

제26조(임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8조(해촉) -----

-----.

1. 질병 등의 사유로 -----
2. ~ 4.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
----- 관광모니터-----
-----.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
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위탁)① (생 략)

<신 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
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
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에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탁)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
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필요한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7.06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능허대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동춘동 742-1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9.03.14	연구단지로 시점에서 550m 떨어진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도동 17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55번길 3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순번	지번	도로명	건축물용도
1	동춘동 53-2	청능대로 46	위험물저장처리시설
2	동춘동 52-1	청능대로 44	단독주택
3	동춘동 29	청능대로 40	단독주택
4	연수동 486-5	함박로25번길 7	단독주택
5	옥련동 270-5	청량로242번길 10-6	단독주택
6	옥련동 270-2	청량로 242	단독주택
7	옥련동 270-8	청량로242번길 10-10	단독주택
8	옥련동 270-11	청량로242번길 10-8	단독주택
9	옥련동 270-13	청량로 234	다세대주택
10	옥련동 270-16	청량로242번길 10-12	다세대주택
11	옥련동 271-4	청량로242번길 15	단독주택
12	옥련동 271-6	청량로242번길 7-2	단독주택
13	옥련동 271-8	청량로242번길 14	단독주택
14	옥련동 271-9	청량로242번길 18	단독주택
15	옥련동 271-10	청량로242번길 10-13	단독주택
16	옥련동 271-11	청량로242번길 10-11	단독주택
17	옥련동 271-12	청량로242번길 10-9	단독주택
18	옥련동 271-15	청량로242번길 10-21	단독주택
19	옥련동 271-16	청량로242번길 10-19	단독주택
20	옥련동 271-17	청량로242번길 10-35	단독주택
21	옥련동 271-19	청량로242번길 10-33	단독주택
22	옥련동 270-9	청량로 236	다세대주택
23	옥련동 270-10	청량로242번길 4	다세대주택
24	옥련동 270-22	청량로242번길 6	다세대주택
25	옥련동 271-3	청량로242번길 10-14	다세대주택
26	옥련동 286-3	한나루로197번길 42-4	다세대주택
27	옥련동 271-7	청량로242번길 10-1	단독주택
28	옥련동 271-14	청량로242번길 10-25	단독주택
29	옥련동 270-15	청량로 234-1	다세대주택
30	옥련동 286-4	한나루로197번길 42-2	다세대주택
31	옥련동 271-5	청량로242번길 13	단독주택
32	옥련동 286-1	한나루로197번길 42-6	단독주택
33	연수동 561-6	함박외로50번길 21-6	기타제2종근생